

사규별 주요개정사항

시행일 : 2016.7.22

연번	사규명	개정 주요 내용	부 서
1	업무직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〈규정 제888호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안전업무직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용어의 정의 개정 (제4조) - 안전업무직 채용방법 및 호봉산정 예외 특례신설 (부칙) ○ 업무직 호봉관련 조항 신설 (제16조의2) ○ 지하철보안관 정원 증원 (별표1) ○ 남직원 육아휴직 확대 (제23조) ○ 선고유예기간 중 당연퇴직 대상에서 제외 (제28조) 	인사처
2	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〈규정 제889호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당연퇴직 조항 개정(자체 감사 개선요구 반영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근로계약 자동종료 제외 (제18조) - 용어정의 명확화 (제23조) 	
3	취업규칙 일부개정규정 〈규정 제890호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년 및 16년 노사합의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개선 - 불임치료 휴가, 재해구호 휴가 신설 - 태아검진 유급휴가 개정 - 병가 증빙서류 간소화 : 2일 이내 병가는 진료 영수증으로 증빙가능 	
4	기간제 및 업무직근로자 취업규칙 일부개정규정 〈규정 제891호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년 및 16년 노사합의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사용 개선 - 불임치료 휴가, 재해구호 휴가 신설 등 ○ 15년 자체감사결과 개선요구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서 제외 ○ 안전업무직 신설에 따른 관련조항 추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근무형태, 근무시간, 휴게시간 및 휴일에 관한 사항 추가 	노 사 협력처